

		보 도 설 명 자 료		
		배포일시	2020. 12. 1.(화) / 총 7매(본문7)	
담당 부서	산업입지법	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김근오, 사무관 심재문, 주무관 김학희 • ☎ (044) 201-3677, 3676 	
	새만금사업법	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박건수, 사무관 김영지, 주무관 김범규 • ☎ (044) 201-3689, 3698 	
		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김준성, 서기관 홍지광, 주무관 김진배 • ☎ (063) 733-1141, 1143 	
	도시재생법	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황운언, 사무관 박선영, 전문위원 박성수 • ☎ (044) 201-4903, 4907, 4909 	
	건축법	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김동준, 사무관 최민중, 주무관 정연수 • ☎ (044) 201-4989, 4991 	
보 도 일 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산업입지법 · 새만금사업법 · 도시재생법 · 건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

[산업입지법]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

[새만금사업법]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 및 규제자유특구 도입 등

[도시재생법]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인정사업 지원 특례제도 도입

[건축법] 품질인정제도 도입 및 50만 이상 지자체 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, 「건축법」 개정안과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(더불어민주당, 전북 전주시갑)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및 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
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

- 산업단지 조성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 하고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‘스마트그린 산업 단지’ 도입의 기반을 마련한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

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* 산업단지의 환경·에너지·안전·교통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·정보통신·에너지기술 등을 융·복합하여 조성하는 지능형 산업단지
-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정의 및 산업단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,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.
- 또한,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와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.

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
-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청장에게 스마트그린 국가시범 산업단지 지정요청 권한 등을 부여한 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

- 새만금 내 산업단지는 새만금청장이 선제적으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입지법에 따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.
-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등 여건이 우수한 새만금에서 스마트그린 산단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.

② 새만금 규제자유특구 특례 도입

- 새만금 지역에 대해 새만금청장이 도지사와 협의해 계획을 수립한 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.

- 이에 따라, 새만금지역 내 각종 인·허가 권한 등을 가진 새만금청장이 그린산업 등 핵심산업을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, 보다 효율적인 신산업 육성이 가능해졌다.

③ 새만금 스마트도시 추진

- 새만금 지역에 대해 새만금청장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.

- 이는 새만금지역 내 각종 개발계획 승인권한 등을 가진 새만금청장에게 스마트도시계획에 대한 권한도 일원화하여, 보다 체계적인 새만금 개발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.

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
- 도시재생사업의 중복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정사업에 대한 지원 특례를 도입한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절차 간소화

- 그간, 지자체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·변경시,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침에도 동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할 경우 다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다.
-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공유재산 취득내용을 포함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수립·변경된 경우에 지방의회 의결은 생략할 수 있게 된다.

◆ (예시) 甲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**부지 매입계획을 포함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**을 입안하여 주민 공청회와 **시의회 의견청취**를 거치고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비지원 사업으로 **선정**되었다. 예전처럼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**시의회 의결을 다시 거칠 필요가 없어지자** 선정 후 바로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**설계에 착수**할 예정이다.

② 국가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위원회 심의 생략

- 도시재생 전체사업 중 국가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와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중복으로 거치도록 하였으나,
 - 앞으로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친 국가지원 사업은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.

③ 도시재생 계획 변경의 간소화

- 또한,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* 시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하고,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국가지원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**활성화계획 변경권한**을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**이양**하는 등의 절차를 개선하였다.

*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등

④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특례 범위 확대

- 지난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도입한 인정사업의 경우, 마을회관 등 **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** 및 문화시설 등 건축에 따른 **지방세 감면** 등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으나, 이번 개정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인정사업이 보다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된다.

「건축법」

- 건축자재 관리 강화 및 지역거점 안전체계 구축 등을 통해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는 「건축법」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도입

- 최근 발생한 화재사고 등으로 화재안전 관련 주요 건축자재의 성능과 품질관리 등을 강화하고 불량 건축자재의 생산 및 유통을 근절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.
- 이에 따라 화재안전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자재성능, 품질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재만 생산 및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'품질인정제도'를 도입하였다.

<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개요 >

- (목적) 자재 성능 및 공장 품질관리능력을 갖춘 자가 자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, 매년 제조·유통·시공현장을 불시 점검함으로써 불량자재 생산·유통 근절
- (대상) 복합자재, 방화문, 내화구조 등 화재안전 관련 품질관리가 필요한 주요 건축자재 제조업자, 유통업자, 시공사 등 건축관계자



②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

- 건축 인·허가부터 철거까지의 건축물 전생애주기 동안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며,
- 이러한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*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법률상 센터를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설치가 제한적이었다.

*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기 어려웠던 건축 인·허가 및 공사장 점검 등의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

- 이에 따라 지역 건축물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고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이 더욱 중요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센터 설치 확대를 하기 위해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는 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.
- 이번에 개정된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및 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 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, 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개정사항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.
 - 「건축법」 개정과 관련하여 품질인정제도의 경우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,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의 경우 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.
-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“ 「산업입지법」, 「새만금사업법」 개정을 통해 신규산업단지에 스마트그린 인프라 조성, 재생에너지 발전 확충, 녹색건축물 설치 등 사업추진이 용이하게 되어 기후 환경위기 대응, 경제활력 제고 등 사회·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”고 밝혔다.
 - 또한, “3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와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기반을 바탕으로, 새만금 국가산업단지(산단 내 5·6공구, 약 3.7km²)를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조성하여 한국판뉴딜과 미래 수소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계획”으로 “새만금청장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권한 부여 등도 새만금 신산업 육성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”한다고 덧붙였다.

- 아울러, 「도시재생법」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줄어들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, 인정사업에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 특례 도입을 통해 지역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.
- 또한, “「건축법」 개정을 통해 화재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,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에 따른 견고한 지역거점 관리체계 마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말했다.

  <p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능지역</p>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심재운 사무관 (☎ 044-201-3677, 산업입지법)이나, 김영지 사무관(☎ 044-201-3689, 새만금 사업법), 박선영 사무관(☎ 044-201-4907, 도시재생법), 최민중 사무관(☎ 044-201-4907, 건축법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